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의 위험의 이전에 관한 소고

장 원 석*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인도와 위험의 이전 |
| II. 위험과 소유권 이전의 문제 | IV. 마치며 |

I. 머리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한국이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 대한민국도 가입함으로써 발효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흔히 “CISG”라고 부르고 있다.

협약에서 제4장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66조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의 결과를 규정하는데 제67조 내지 제69조는 위험의 이전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는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시 멸실 또는 훼손위험의 배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 투고일자 : 2018년 12월 1일, 심사일자 : 2018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12월 21일.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물품 또는 서류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후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¹⁾

일반적으로 물품매매에 있어서의 위험(Risk)은 계약 체결 후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정확히는 위험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위험의 발생으로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매도인의 이행의무가 여전히 존속하는가라는 의미로 '급부위험' (혹은 물건위험)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대급부청구권, 즉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는가라는 의미하다, 즉 대가위험 또는 반대급부위험을 말한다.²⁾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제66조)이 규율하는 것은 대가 위험을 의미하는데 Incoterms에서 말하는 위험과 같은 의미이다.

국제물품거래에 있어서 운송을 통하여 물품의 공간적인 이동이 발생하다보면, 운송 과정에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문제가 어느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면, 위험을 부담시키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위험문제를 어느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입장을 가지며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벗어나는 대신(채권자의 급부위험 부담), 자신의 반대급부청구권(채무자의 대가위험 부담)도 상실한다. 위험이전 시점으로 동산매매의 경우에 인도 시, 부동산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 혹은 인도 시라고 보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위험의 이전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협약(CISG)의 위험의 이전 문제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와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협약의 내용에서는 예외적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라도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66조 단서)고 하고 있는데 위험의 이전 시기 및 소유권 이전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상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해설, 한국학술정보, 2013, 188면.

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238면.

II. 위험과 소유권 이전의 문제

1. 위험의 이전시기

협약 제66조 본문에서는 매수인에게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위험이 이전 될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대금에 대한 위험을 말하는데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67조 및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CISG에 “매도인은 계약과 CISG에 의하여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또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도 소유권의 이전이 매도인의 주요한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CISG에서 소유권의 구체적인 이전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둘째, “CISG은 단지 채권계약의 성립과 그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특별히 CISG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CISG는 물품의 소유권에 미칠지도 모르는 효과에는 관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4조 b항),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CISG에서는 규율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³⁾

(1)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제67조)

1) 매매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한 장소에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흔히 교부(hand over)라는 것은 점유의 이전을 이야기하며 민법상 인도(delivery)보다 좁은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민법(제198조) 반환청구권 양도에서의 인도처럼 관념화된 인도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위험 이전시기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인 물품의 인도시기는 일치하게 된다(제31조). 하지만 이는 인도의 효과로 위험이전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3) 한규식, 국제물품매매법(CISG)에서 위험의 이전,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1호, 2003. 73면.

2)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경우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한정된 것을 말하며, 특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제69조가 적용될 것이다.

3)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제67조 제2항).

(2) 운송 중 물품의 매매(제68조)

1) 원 칙

원칙적으로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 체결 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운송중의 물품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위험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에 이루어진다. 이때의 운송은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생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계약체결의 이전에 있었는지 이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위험이전 시 물품에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은 매도인이 하여야 한다.⁴⁾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송 중 해상에서 물품이 매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통상 “운송 중”이란 용어로 거래조건이 추가된다. 이는 Incoterms에서 CFR 및 CIF 조건에 해당되는데, 운송 중 물품이 매매되었을 때 위험의 이전문제는 해석에 따라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돌이나 화재처럼 발생시기가 명확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운송 중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 시기가 불명확할 경우가 많다. CISG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if the circumstances so

4) 최홍섭,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의 해설, 법무부, 2005, 158면.

indicate)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시기로 소급하여 위험이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된다.” 라는 표현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몇 가지로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 알았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실만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계약체결 시에 알았던 물품의 손실도 포함된다. 세 번째,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본래의 손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상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것은 매도인이 보험가입 후 매수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매수인이 계약체결 이전에도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CIF 계약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운송 계약을 표창하는 서류의 의미는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서류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매수인에게 소급하여 위험을 부담시키고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위임하는 결과이다.

(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기타의 매매(제69조)

1)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

CISG 제69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즉,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경우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이는 송부매매와 운송 중 물품의 매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여기에서 매수인이 적시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위반을 한 때로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적시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위반을 한 때로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2)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여기에서 물품이 자기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매수인의 인식은 서류를 교부받음으로 또는 매도인이 통지를 함으로써 이뤄진다. 물품이 자기 처분에

해운통상법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4호)

맡겨져 있다는 매수인의 인식은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또는 매도인이 통지해 줌으로써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물품이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사실을 매수인이 알기 위해서는 선적서류나 서면은 도달하여야 한다.⁵⁾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

매매계약이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물품은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제물품매매에서 중요한 종류매매 경우, 위험의 이전은 물품이 특정될 것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명백히 매매계약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물품이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즉, 물품이 계약에서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것으로 되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위험의 이전과 소유권 이전

국내법에서 소유권은 당사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전이 된다. CISG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당사자 양쪽의 책임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위험의 문제는 누가 부담할 것이며 제3자에 대한 책임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것인지 물품소유권이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CISG 제30조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여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도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을 명시하고 있다.

Ⅲ. 인도와 위험의 이전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운송 중 발생하는 훼손, 멸실, 화재 등으로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문제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

5) 최홍섭, 앞의 책, 법무부, 2005, 161면.

약은 매도인이 운송인을 통하여 물품을 발송할 때 인도에 대한 규칙과 연관되어 있고, 소유권의 이전이나 국제물품매매와 같은 다른 상황과는 연관 지우지 않고 있다.

CISG에서 인도의 정의는 없지만, 제31조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비추어보아 인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과 적합한 물품의 “인도(delivery)”가 일어나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행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제물품매매에서 일반적으로 인도의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물품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있고 이후로는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두 번째, 물품의 인도 장소까지 운송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그 이후의 운송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세 번째, 매도인이 물품을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인도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인도의 정의가 CISG에서는 없지만 제 31조에 미루어 보아 인도란 실질적으로 계약과 적합한 물품의 인도(delivery)가 일어나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SG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데 있다. (가)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과 (나)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어야 하거나 또는 제조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또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것과 (다) 기타의 경우로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도란 첫 번째 물품을 운송인에게 전달(handling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과 같은 점유의 이전행위로 볼 수 있고,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것(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at place)으로 구분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6) 한규식, 앞의 논문, 76면.

* CISG에서 인도와 위험의 이전 비교

	CISG	
	인도	위험이전
운송을 포함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67조 제1항 2문)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제67조 제1항 2문)	그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제69조 제2항)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둔 사실을 매수인이 인지한 시점
운송 중 물품매각	계약체결 시 또는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시기(제68조)	계약체결 시점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임의처분 상태로 놓여짐 (제69조 제1항)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시점

Incoterms에서도 ‘매수인이 인도를 승낙하여야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물품이 매매계약과 적합한 것으로 매수인이 승낙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매도인이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운송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매수인이 승낙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규정하여 CISG와 같은 맥락의 견해를 취한다.

인도와 위험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67조~70조는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포함하여 개별적 계약의 다양한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CISG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위험이전에 대해 인도와 연결하여 운송을 포함한 경우 운송 중인 경우와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IV. 마치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의 위험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 혹은 매수인에게 양도 전에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물품 운송 중,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는 중, 그리고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고 보

유하고 있는 중 등 언제 발생할지 이는 예측하기 힘들다. 우연히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매매계약 당사자의 책임으로 야기하지 않는 경우, 어느 당사자가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자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그리고 손상된 물품을 구제하고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 누가 적은 비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 물품의 보호와 관리에서 과실에 관한 소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한다.

CISG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아 생기는 국제물품매매의 분쟁을 준거할 수 있는 통일법으로 제정되었다. CISG의 규정에서 위험의 이전문제는 매수인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과 관련하여 국제물품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매도인은 손상된 물품과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매수인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대금을 대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며, 소유권의 이전이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물품의 소유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의 이전 문제를 소유권의 이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G에서는 위험이전을 물품의 인도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소유권 문제를 각 국의 국내법에서 보이는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유권 문제를 통일화는 작업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저해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험이전을 소유권이전과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인현, 「해상법」 제4판, 법문사, 2016.

김정호,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최서원, 「로스쿨 국제거래법」, 나눔, 2016.

장호경·장효나, “무역거래 당사자 간 계약물품의 위험이전에 있어 CISG와 Incoterms 2010의 비교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 연구, 200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토” 국제거래법연구 제20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1.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한 논쟁의 실익”, 무역상무연구 제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4.

정재환,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운송물품의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원동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관련 쟁점,” 보험법연구 제12권 1호, 2018.

유주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험학회지 제110집, 2017.

정경영,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2016.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법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2집 제2권, 2011.

한규식, 국제물품매매법(CISG)에서 위험의 이전,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1호, 2003. 4.

<국문초록>

국제물품매매에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에 대해 준거할 수 있는 통일법으로서 CISG는 제정되었다. 물품의 손실 또는 훼손은 운송 중 물품이 매수인에게 도착하였을 때 발견되므로, 매수인이 그러한 손해를 책정하고 운송인 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이처럼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부터 손해 및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Incoterms와 같은 거래조건을 따른다고 합의한 경우 위험이전시기 및 위험부담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준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함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제정되었다.

CISG는 위험의 이전문제를 소유권 이전과 연결시키지 않고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형평성과 이해관계를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유권 문제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보는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통일화함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국제물품매매계약, UN협약, 위험의 이전, 소유권 이전, 물품의 인도

<Abstract>

A Brief Review on the passing of risk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Jang, Won-Seok**

Contracting parties sometimes does not specify the exact point of transfer of risks. There are two points of vie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ne method is that the time of the passing of risk is to make connection with the delivery of the goods. The other on is that the time of it is to connec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property.

When no party has the responsibility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problem concerning which party should burden the damage or loss takes place.

Incoterms makes clear this problem to clarify tha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 seller has fulfilled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CISG chooses another way to announce that the Convention is not concerned with effect which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sold. It is reasonable practically for the convention to stick on delivery of the goods in connection with the time of passing of risk in sake of equity as well as efficiency to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Keywords : CISG, passing of risk, transfer of property, delivery of goods.

* Pusa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Law Studies, Full-time researcher.